

울산 북구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성공사(전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울산 북구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조성공사(전기)		
추정금액	239,892,000원	접수개시일자	2020. 10. 12. (월)
기초금액	113,628,000원	접수마감일시	2020. 10. 14. (수) 10:00
추정가격	103,298,182원	개찰일시	2020. 10. 14. (수) 11:00
부가가치세	10,329,818원	개찰장소	부산디자인진흥원 입찰집행관PC
관급자재비	126,264,000원	입찰방법	총액·지역제한·적격심사대상

※ 유찰시 재입찰

- 2020. 10. 14. (수) 14: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5:00입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공사개요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양동1길 일원(L=900m)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공사내역 : 울산 북구 양정 자동차테마거리 전기 공사(경관조명 설치, 전력케이블 설치 등)

라. 기 타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

마.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도면 등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담당자로부터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 도시공공디자인팀 김유준, 051-790-1065】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

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공공 입찰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4.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안 될 경우 같은 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각 2개씩 전자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 견적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6호 (2020.06.22.)』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정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2020.06.22.)』 제2장 <별지 6>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1.5억 원 미만)”에 의하며, 수행능력 평가 10점, 입찰가격 평가 90점으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령 제48조 규정으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개찰일)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 서류 및 보완요구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재공고 :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에 부치며, 재공고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공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12-40호 (2012.06.28.)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및 계약특수조건 이행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의거 건설업 영업정지 4월~8월 또는 하도급 금액의 4%~30%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나.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하도급계약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의 조정, 노무비 누락 등)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하도급은 직불제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에 적극 협조하여 대금의 적기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06.10.)에 따라 원도급자가 3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합의한 경우와 하도급대금 지급 확정 판결 또는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지체 2회 이상 포함) 등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기타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의 경우 참가자는 공사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655,659원	2,234,023원	169,705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06.10.)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은 원가내역서상의 적용율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06.10.)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사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2020.06.10.)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우리진흥원 홈페이지(www.dcb.or.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 공사문의: 051-790-1065

- 계약문의: 051-790-1024

2020. 10. 08.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 경리관